

제400회국회
(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2월6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135)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621)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0)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7)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
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
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4)
1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8)
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9)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3)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1)
16.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9)
1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5)
1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4)
1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2)
2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7)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0)

상정된 안건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135) 2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621) 2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0) ... 2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7) 2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 2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 2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	2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	2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	2
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	2
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4)	2
1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8)	2
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9)	2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3)	2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1)	2
16.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9)	2
1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5)	2
1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4)	2
1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2)	3
2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7)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0)	3

(10시17분 개의)

○소위원장 기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 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2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135)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621)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0)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7)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
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
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4)
1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8)
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9)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3)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1)
16.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9)
1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5)
1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4)

1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2)

2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7)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0)

○소위원장 기동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말씀하시고, 제가 어제 관련된……

○소위원장 기동민 예, 말씀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정점식 위원 부산이 2020년·2021년 각 파산 신청 사건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했는데 재판부 1개 늘렸지요? 2019년도에는 파산재판부가 2개, 2020년부터 22년 경우에는 3개였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정점식 위원 재판부 늘리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재판부 변동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재판부를 늘려 놓으니까 영남 그쪽, 울산·경남 지역에서 부산 쪽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재판부만 늘리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처리 일수의 2배입니다.

○권인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똑같아지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확인이 여기는 없어서…… 그다음에는 다시 또 그게 기간이 똑같아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점식 위원 아니, 부산은……

○권인숙 위원 거의 같아지는 걸로 기억 나는데……

○정점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권인숙 위원 아니에요?

○정점식 위원 2020년 9.38개월에서 21년 4.70개월이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면 18년부터 21년까지의 평균이 9.8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보다 2배나 더 걸리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뭘 2배가 더 걸려?

○정점식 위원 서울회생법원 사건 건수하고……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니요, 사건 처리 일수가……

○정점식 위원 서울회생법원은 재판부가 몇 개입니까? 재판부,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니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지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법원 자체 내에서 사무분담을 통해 가지고 재판부를 늘리면,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법원을 늘려야 된다, 회생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법원에서 파산재판부 파산전담법관을 해 가지고 파산재판부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지방의 파산재판부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런 식으로 인사 원칙을 확립을 하면 전문성도 굉장히 하겠지요. 이것은 회생법원의 신설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재판부 문제였는데 계속 우리 차장님은 법원을 만들어야 당사자들한테 소위 신청 기간을 줄여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 자료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를 들어 어제 장동혁 위원님이 부산 파산재판부 현황을 요청을 안 했으면 다 속고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기가 찹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어제 판단했고 또 서울회생법원의 어떤 성과나 모범 이런 부분들이 전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수원과 부산에 대한 회생법원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 등에 대해서는 파산 전담 재판부를 늘려서 한 1년 뒤에 두 기관이 어떻게 잘 상호 경쟁해서 성과를 내는지를 보고 추후에 더 확대할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의안 관련해서는 어제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 바로 기관 의견 듣고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무부 의견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형 집행과 관련해서 수형자의 작업시간을 1주에 최대 60시간으로 정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하고 비교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의견이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결과 정부안에 따르면 1주의 작업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8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최대 60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근로자가 최대 일 8시간, 주 40시간이기는 하지만 연장 가능한 기간까지 하면 주 6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하고 비교해서 볼 때 연장 시간으로 보면 그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정부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취사·청소·간병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운영적 작업이 주로 휴일에 이루어지고 교도 작업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긴 대신에 작업 강도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원하는, 즉 신청이 있는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모로 기관 운영과 수형자의 본인 위해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로금 지급 시기 관련입니다.

어저께 현재 안이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는데 이 ‘석방할 때’를 삭제함으로써 시기가 불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상 법무부 예규에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2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지급 신청을 하고 또 승인 즉시 수형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기를 법에 하면 법 문안 자체가, 조위금도 뒤에 있습니다.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해서 이 ‘석방할 때’를 빼고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하고 의무만 법에 규정을 해 놓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수형자의 인권에, 권익을 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행정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 게 여기 60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지요. 여기서 1주 근로시간, 당사자 간 합의 시 12시간 이내 연장 가능이어서 이게 52시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60시간의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근로기준법상?

○법무부차관 이노공 근로기준법에도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면 합의로 52시간에서 8시간을 더 연장해서 주 60시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30인 미만인가요, 교도소가?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근로기준법상에.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도소 사업장이……

○법무부차관 이노공 저희가 60시간으로 정한 것이 이게 근로기준법하고 엄청나게 차별이 있거나 그러한 정도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민사소송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심정희 우선은 4항부터 7항까지 표지에 ‘상고제도 개선 및 부당소송 대응방안’이라고……

○권인숙 위원 이게 너무 헛갈린다.

○소위원장 기동민 의사일정이 좀 늦게, 아침에 확정이 돼서……

○전문위원 심정희 의사일정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저희가 부제로, 그래서 ‘상고제도 개선 및 부당소송 대응방안’으로 붙인 소위 자료 보시면

되겠고요.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4개 개정안은 주제별로 상고이유서의 원심법원 제출에 대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당소송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개 이렇게 크게 구분되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상고이유서의 원심법원 제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조문은 보셨고요.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상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 현행은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한 날로부터 상고법원에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개정안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원심법원에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바꿈으로써 지금 상고이유서 준비기간이 실질상 40일인데 한 60일 정도로 늘어나면서 상고 준비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게 되면 원심법원이나 상고법원이 상고 각하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상고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차이가 있고요.

다음에 소위 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원심법원이 상고 절차 중 일부를 수행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역할이 많이,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상고 절차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정부 의견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법무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 취지는 공감합니다. 대법원의 부담 완화,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기간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법원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대법원의 업무가 매우 과중하고 사건 처리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부적법한 상고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와서 대법원의 사건

관리 부담이 더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상고심으로 하여금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고를 해 놓고 이유서를 안 내서 그냥 기각되는 사건의 수인데요. 거기를 보면 민사 같은 경우에 2021년 627건, 가사 48건, 행정 286건, 특허 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차장님, 이렇게 되면 상고장 그리고 상고이유서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게 되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니까 원심법원에서는 제출되었는지만 담당,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제출이 되면 기록을 바로 대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요.

○장동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걸 통해서 걸러내는 것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끝날 사건만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는, 그러면 상고이유서를 접수하고 미제출된 것은 거기서 종결하고 그다음에 제출된 것은 상고법원으로 올리게 되는 역할은 누가……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원심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장동혁 위원 원심법원이요? 원심 재판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원심 재판부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우려하는 것은 제도에서 상고심, 항소심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원심법원에 항소장·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항소이유서를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고 나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다라고 열심히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재판장이 다 보게 되면 그 변호사는 그 재판부에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원심 재판장이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 변호사가 자신을 비판한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상고심·항소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제출만 되면 재판장은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바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출되는 순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변호사가 그런 우려를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이걸 제출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걸 보지 않고 제출됐는지 여부만 확인한 다음에 종결하고 제출되면 바로 상고심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 부분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지 않으면 저는 이 제도는 실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판결을 한 판사가 자기가 한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를 직접 읽어 보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재판에 대해서……

○**장동혁 위원** 그게 법원 중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느낄 부담을 생각하셔야지, 변호사가 그런 부담을 느낀다고 했더니 오히려 재판장이 읽어 보고 내가 그동안 재판을 뭘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이게 더 유리한 효과가 있고 더 좋은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 제도를 시행하면 아무 문제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지……

예를 들면 일단 판결 선고 이후에 제출되는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은 그것을 열람할 수 없도록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대안도 있습니다.

대안은 뭐냐 하면 각 재판부가 항상 대리 재판부들이 있거든요. 어떤 재판부가 판사가 유고인 경우에는 대리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 접수부터의 절차를 대리 재판부가 하고 기록을 보내는 걸 대리 재판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 저는 대리 재판부가 보는 것도 재판장으로서, 제가 만약에 재판장이라고 하면

어떤 판결을 했는데 변호사가 내 판결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쪽 써 있는 것을 옆 재판부 재판장이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제가 판사라면 그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김남국 위원님 말씀 주시고 정점식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국 위원** 차장님,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상고심 제도, 우리 3심제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소하고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사건 관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저는 이거는 위헌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헌성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셨는지……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저희는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고 각하도 어쨌든 재판의 하나인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김남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심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하를…… 아니, 기각은 아니지만 각하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고심, 3심제를 완전히 혼드는 그런 거라고 보이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니요, 아니지요. 상고장을 낼 때 인지를 내지 않거나 또 송달료를 내지 않거나 하면 원심법원에서 각하하거든요. 상고장 심사를 합니다.

○**김남국 위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상고이유서 말고, 상고장.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상고장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보통 상고장 제출하고……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니까 상고이유서도 접수 여부만 보기 때문에……

○**김남국 위원**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인지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원심법원에서 상고장 제출할 때 기간하고 인지 붙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상고이유서도 괜찮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똑같지요.

○**김남국 위원** 그런데 조금은 상고이유서는 달리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접수 여부만 확인하니까요.

○**김남국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항소장이나 상고장은 그야말로 형식적 요건만을 보는 것이고, 상고이유서에는 당사자들이, 피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원심법원에서 잘못했던 것, 잘못 재판했던 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것을 법원에 봐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법원에서 보나 안 보냐를 떠나서 그냥 바로 각하 처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 과정의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재판 절차 중에서 재판을 한 판사한테 그것을 보여 주고 다시 그걸 수정하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게 주로 신청 절차에서……

○**장동혁 위원** 제도의 고안인데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제도의 고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장동혁 위원** 그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니까 판사가 어느 정도 재판을 하는데 좀 반성도 하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았구나’ 생각도 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장동혁 위원** 제도의 고안은 대부분 절차적인 것이거나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에 제도의 고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건에……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는 말이지요, 절차가.

○**장동혁 위원** 그러면 차장님, 지금 항소심 그렇지 않아도 사건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업무 부담은 얼마나 가중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것은 그다지 항소심에서 가중될 것 같지가 않고요. 진짜 문제는 대법원이거든요.

○**장동혁 위원**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항소심에서 별로 부담이 가중이 안 되는 걸 왜, 대법원에서 기계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안 되면 털어 낼 사건인데 그게 부담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지금 항소심에서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면서요? 대법원에서 하는 게 그러면 뭐가 그렇게 큰 부담일지 저

는 잘 모르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8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2018년인데요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 본안 합의사건이 9468건인데 그중에서 5192건이 한 사람이 상고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상고이유서 안 내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대법원에 와 가지고 기록을 보내야지요. 그다음에 그걸 또 받아 가지고 대법원에서 또 송달도 해야지요. 그다음에 기다려야 하는 이게…… 지금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궁여지책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장동혁 위원** 그 절차와 과정에서……

○**소위원장 기동민** 정점식 간사님 얘기도 좀……

○**정점식 위원** 아니, 계속 질의하게 하세요.

○**장동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아니, 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동혁 위원** 아니요, 저는 충분히 했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정점식 위원** 아니, 저도 조금 전에 김남국 위원님 말씀하신 소위 상고 제도의 본질과 관련해서 상고이유서 미제출했다고 각하를 한다, 이것은 상고 제도의 본질하고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차장님은 변호사 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소위 주임검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재판장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모르십니다. 나중에 가서 대법관 마치시고 한번 개업을 해 보면 재판장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재판부에 이 건 하나로 이렇게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항소이유서를 써 보면 굉장히 원심법원을 엄청 비판을 하는 항소·상고이유서를 쓰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게 쓰지요.

○**정점식 위원** 그렇게 쓰는데 그걸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심 재판장이 읽어 본다고 생각을 하면 상고이유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보완책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 대리 재판부만으로 할 것이냐, 대리 재판부 제도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행정법원 사례에서도 보듯이 과연 이게 지금 대법원의 업무 경감 그리고 상고심의 신속한 진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경감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70년 이상 계속돼 오던 우리, 소위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거의 70년 이상 계속돼 오던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검토 없이 이렇게 빨리 바꾸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저희가 상고 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는 정말 수십 년 동안 대법원에서 연구를 했잖아요.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정점식 위원**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해도?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니, 그래서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것이고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냐면, 8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대법관님 한 분이 처리하는 처리 건수가 약 400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되는 건수가 지금 8페이지 오른쪽 표에 보면 연간 많으면 920건, 적으면 한 674건 이 정도니까 이것을 13으로 나누시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지요. 퍼센트로 따지면 3% 내지 6%여서 그래서 저희가……

○**유상범 위원** 차장님, 잠깐만요. 이 사안은 대법원장이 볼 필요도 없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항소사건은 항소장 내고 항소이유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는 항소 법원에 내지요, 항소를 하게 되면?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항소심의 사건 처리 절차와 상고심의 사건 처리 절차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객관적으로.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민사 항소심은 항소이유서를 안 내도 그냥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나 이유서를 안 내면 바로 기각이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떻게 처리돼요? 그러면 바로 기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항소심은 속심이기 때문에 1심에서 주장한 것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 그대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있는 것만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훨씬 더 일반 프로세스를 잡을 때 항소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내라고 하는 것처럼 상고이유서를 상고 법원에 내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왜 바뀌야 되느냐 설명하는데 보니까 결국 주요 이유는, 한 명이 한 5192건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짜증 나는 일이지요, 아주 애일적인 일이고.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이 애일적인 일 때문에 제도를 바꾼다? 이걸 좀 지나치지 않으세요? 어느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상고이유서의 실질적 제출 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유가 된다면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단체에서 ‘이 부분은 충분한 기간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식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지요. 지금 실질적 이유는 말씀하신 특정인이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절차에서 불편함을 준다, 그리고 그 절차가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거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되지 않은 사건을 대법원장이 판단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논리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바뀌야 되는지에 대한. 특정인이 불편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는, 이게 어떻게 제도 개선으로 넘어갑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게……

○**정점식 위원** 잠깐만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점식 위원** 잠깐, 저도 한 말씀 먼저 드리고 같이 답변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정점식 위원** 기본적으로 674건이라고, 2019년 기준으로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건수가 674건인데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도 지적을 한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분식회계입니다. 아니, 대법관들이 이 기록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직원이 그냥 이거 메모해 가지고 하면 바로 이유서 부제출 기각으로 되고, 그리고 대법관 한 분당 얼마나 이게 부담이 떨어지겠습니까라고 했는데 674건 나누기 해 보니까 대법관 1인당 한 달에 4.32건입니다. 그걸 나누기 13, 나누기 12를 하면 4.32건인데 이 한 달에 4.32건을 이렇게 소위 직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상고심 제도를 바꾼다? 이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답변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법관님 1인당 민사 본안사건만 연간 4000건 정도 처리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걸 365일 그중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날짜가 한 250일 이 정도 하면 하루에 판결문, 결정문을 봐야 되는 그 숫자가…… 그걸 안 보고 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수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건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대법원에서 본안심리 하는 데 집중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행정력 낭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자 소송으로 하니까, 전자 소송은 그냥 자동으로 착착 넘어오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됩니다마는 종이 소송 같은 경우는 이거다 우편으로 순서 매겨 가지고 그거 다 기록만 들어서 우체국 택배로 대법원으로 기록이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고이유서도 안 내고 심사도 안 할 사건을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대법원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또 이게 상고이유서 안 내 가지고 각하되면 그것도 다시 원심법원으로 보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력의 낭비도 막아 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다른 분들 의견……

○**권인숙 위원** 차장님, 항소심……

○**장동혁 위원** 차장님.

○**이탄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기동민** 잠깐만요. 권인숙 위원님 말씀

씀 듣고 이탄희 위원님 말씀 듣고 장동혁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할게요.

○**권인숙 위원** 항소심 법원의 의사들을 좀 물어봤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처리를 하게 한 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점식 위원** 공무원 조직은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권인숙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권인숙 위원** 대법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찬성한 것은 아니고?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항소심 판사님들도 어차피 1심 것에 대한 항소이유 다 읽어 봅니다. 읽어 보면 1심 판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항소이유서 쓰고 공격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수십년간 재판 업무하신 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장동혁 위원** 저는 자꾸……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하고 만나서 정책 협의도 해 보았는데 대한변협에서도 다 취지를 공감하고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한변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부각된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원래 재판한 재판부 말고 대리부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처리 속도나 이런 부분들, 특히 대법원의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항소법원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사실 좀 안 들고요.

그래서 이게 항소법원이나 이런 데서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요, 뭔가 이런 식의 법원의 내부 판단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탄희 위원** 차장님, 지금 우리가 전자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항소심에서 상고장 접수받았을 때 대법원에서 그 상고장이 접수됐고 항소심 재판장에 의해서 상고장 각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됐다는 정보를 대법원에서 인지해서 대법원에서 그때 사건번호 부여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종이기록이 꼭 오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건번호 이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탄희 위원** 어떤 점에서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종이 이동하는 것 전제로 해서 다 시스템이 잡혀져 있는데, 행정처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아마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전자적으로 지금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상고장 접수되고, 상고장 각하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사건번호만 부여해 주시면 제 생각에 많은 게 해결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들어 보세요. 일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금 상고기록 접수통지일부터 기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상고장 제출기간으로부터 60일’ 이렇게 하면 당사자한테도 편의가 있고 기간도 명확해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록 접수통지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업무 부담이 확 줄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상고장 제출을 하고 나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지금 대법원에 제출하고 싶어하는 요청이 있다는 것은 저도 확실히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 이게 제출되려면 대법원에서 이 대법원 사건번호가 있어야 되겠지요. 대법원에서 전자적으로만 사건번호를 부여해주면 당사자는 상고이유서에 원심 사건번호 그냥 적어서 내면 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제출받고 그다음에 60일 기간은 상고장 애초에 제출된 시점이 있을 테니 그걸 전자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에서 60일 기간 동안에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 접수 안 되면 그것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60일 기다렸다가 기록을 안 받고도 그냥 각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면……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대법원 사건으로 간주를 하고.

○**이탄희 위원** 그렇지요. 기록이 오기 전에, 중

이기록이 오기 전에 전자적으로 사건번호는 부여를 하되 그래서 결정은 대법원에서 해 주되 그리고 당사자도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내게 해 주되 실질적으로 행정 부담은 확 줄일 수 있을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점들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지금 현재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행정처에서 한번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지금 법사위에서 참 독특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법원에서 근무했던 위원이 그래도 지원하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법원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보다 더 급한 여러 가지, 진짜 소송의 당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지금 걸모양 바꾸는 데…… 그런데 사실은 여러 번 했다가, 그동안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만 대부분 막히는 것은 예산 때문에, 예산 협의가 안 돼서 막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했던 회생법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뭔가 추진해 왔는데 그래도 뭔가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냥 실효성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와서 법원 만들겠다고 하고. 아까 정점식 간사님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수적인 변화는 없다. 그런데 재판부 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확인도 안 하고 진지하게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오늘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당사자나 변호사가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지금 항소심 재판장들도 1심 법원에서 올라온 것 항소이유서 다 보면서 다른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 있다, 당연히 보고 있지요. 그 재판부 재판장이 보는 것하고 상고심에서 다른 판사가 보는 것하고 그걸 같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답답하고요.

이 상고심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고

법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상고심 개편했다, 상고심제도를 바꿨다라고 하기 위해서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예산도 안 들고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이 방법 하나 들고 와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저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피하시고.

저는 지금 법원이 가지고 오는 여러 법안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진짜 이게 법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 하나 냈다고 그냥 목록 하나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실제 재판제도나 지금 민사든 형사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법원 사법행정의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한 발도 나아가지 않으면서 회생법원, 상고심 개편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 이게 뭐가 크게 달라졌는지, 그런데 당사자의 대법원 재판 받을 권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위헌적 소지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늘 보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설득하는 모습도 저희는 찾아볼 수 없고, 그 다음번 회의에서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설득하는 모습도 없고,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법원을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 있으세요?

○김남국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견해차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각 기관에 대한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논점들이 꽤 있겠다 싶습니다. 좀 더 숙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나의 단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의 과정들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진단이 같이 토론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말씀하신 내용들 잘 검토를 해서 한번 이 법안 내용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특히 이탄희 위원님 제안하신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기동민 자체적으로 그런 생산적인 대안들을 내놓으신 거니까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고요.

9페이지 계속 토론해야 되나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정점식 위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기동민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총괄적으로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니, 아니요.

○전문위원 심정희 약간 주제가 다르기는 합니다, 부당소송인 대응방안이라서.

○소위원장 기동민 9페이지부터?

○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위원장 기동민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심정희 9페이지입니다.

다른 주제입니다. 상고제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당소송인 대응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송구조 제외되는 소송비용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소송구조에서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만 소송구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구조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 또 그의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 등을 소송구조 제외요건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구조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 각하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소송인들이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정부 의견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소송구조 제외되는 소송비용 추가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법무부는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법원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찬성 의견인데요. 지금 이렇게 좀 남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 이분들이 2020년에만 해도 2만 3036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소를 제기하고 나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소송구

조를 신청하고 또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는 소 각하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다시 또 소송구조신청을 또 하고 그래서 소송구조신청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송구조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하하는 데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고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렇게 소송구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우선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여기 개정안 1항 3호에 보면 ‘제128조제1항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이라는, 같은 조 같은 항 안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그것은 수정해야 되겠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차장님, 3호에 이 소송구조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제외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법원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소송구조 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 요건을 다 심사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일단은 소송구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소송구조를 받아 줬고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은 꼭 필요한 소송이었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다 제외한다는 것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 부분은 다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소권 남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소송구조신청을 해 놓고 거기다가 소송구조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또 소송구조신청 하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를 내면서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다음 절차를 제기하면서 다시 소송구조신청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문에 의하면 그렇게 소권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소송구조 비용, 소송구조신청에 필요한 비용이 제외가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소송구조신청 비용 자체는 어떤 경우든 다 제외를 하고 그것은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인지가 제가……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 경우는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말 소송구조 비용 신청을 할 능력조차도 안 돼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결국 소송구조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일단 처음 진입할 때부터가 장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돈이 인지대 1000원하고요, 그다음에…… 소송구조신청 할 때 드는 돈이 인지대 1000원하고 송달료 2만 800원입니다. 합쳐 가지고 2만 1800원인데요.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은 그 정도 돈이야 뭐 얼마든지, 그 정도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2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 2만 몇천 원 때문에 이렇게 남소를 제기하고 소권을 남용하고 계속 소송구조신청 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과연 신청을 안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저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래서 저희……

○장동혁 위원 글썄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분들 그리고 그 소송이 합당하고, 승소 가능성 또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처음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모든 사건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입 장벽을 쳐 두는 것이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전문위원 심정희 위원님, 여차피 여기 3호 부분은 자구 정정이 필요한데 정확히 여기 1호·2호에 해당하는, 지금 저희가 이제 1호·2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저희가 자구 정리를 좀 하면……

○장동혁 위원 제가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심정희 예.

○장동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항 본문에 의한 게 아니라 단서의 경우 1호·2호 잭아요?

○전문위원 심정희 예.

○장동혁 위원 그러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렇게 자구 정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의견 더 있으세요?

○권인숙 위원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게 4호에서 '133조에 따른 불복신청' 이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또 계속 발생하는 모양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차장님, 굉장히 자신 없는 듯한 답변 태도인데.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게 이것이지거든요. 그러니까 10페이지 하단에 133조가 있는데 즉시항고를 하는 거예요. 즉시항고를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 즉시항고 비용에 대해서 다시 소송구조를 또 신청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즉시항고 하면서 소송구조신청 또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여기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분이 소권 남용적으로 막 신청하시는 대부분…… 거의 99.9%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유상범 위원 특정인에 의해서 반복되는 건가요, 이것도?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특정인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까 몇 건이나 된다고 그러셨지요, 통계적으로?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2020년에 2만 3036건입니다. 이게 본안 기준이지요.

○유상범 위원 자구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소위원장 기동민 예.

○장동혁 위원 자구 정리만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기동민 예, 자구 정리만 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부당소송의 피고에 대한 송달 간이화입니다.

개정안은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서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변론 각하판결을 하려는 경우 소장부분 등 피고에게 송달해야 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드리면 지금 부당소송인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절차상 피고에게 소장부분이나 준비서면, 선고기일 통지, 판결서 등을 송달해야 되는데 부당소송인들은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신속한 절차 종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송달료를 국고 대납 방식으로까지 처리하면서 송달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송달을 공시송달로 간이화하여 절차를 생략하려는 취지이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즉 공시송달이란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인 송달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법원이 송달을 생략하거나 이렇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 7년 동안 소를 제기하고—11페이지 보시면—최소 5건 이상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렇게 수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예가 있고요.

영국 예처럼 실질적인 접근으로 '상습적, 지속적, 합리적 근거 없이 소 제기나 신청을 한 자' 이렇게 실질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의견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일단 입법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의견대로 공시송달 취지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공시송달을 통해서 해결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대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전문위원 대안은 결국 일부에 있어서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분이나 기일 통지서, 판결서 등을 송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어떤 취지 같은데 현재 민사소송법 체계의 정합성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장을 피고…… 소장이 제출되어야지 재판이 진행되고 그 소장부분이 결국은 피고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판결문만 송달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돼서, 법문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법원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 의견은 개정안 원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고요.

송달을 이렇게 생략하는 방안은, 우리 소송법상 판결을 하면서 송달 자체를 안 하고 사건을 끝낸다? 그것은 우리 소송절차에 없거든요. 없어서 좀 공시송달이라도 뭔가 송달 절차라는 것을 하고 그래서 판결이 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공시송달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소권 남용의 요건을 미국과 같이 수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좀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를 해서 될수록 이게 소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은 구제를 해 주고 명백하게 소권 남용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 절차로 해서 처리를 하고 해서, 그거를 구체적인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예, 의견 주시지요.

○장동혁 위원 차장님, 그렇게 되면 피고로서는 사실상 소가 제기되거나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게 됩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소권을 남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상대방으로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래서 또 앞으로 나를 어떻게 괴롭힐 건지, 어떤 판결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공시송달하는 거의, 99.9%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방으로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소권을 남용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반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는데, 송달료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송달료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거나 국고에서 그것을 충당해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소송이 있었던 사실조차도 알려지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이게 공시송달로 하니까 법적인 체계 정합성에 안 맞는다는 문제는 법으로 규정하면 예외를 두면서는 그것이 크게 다른 공익적인 목표나 다른 필요가 있다면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피고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원고나 이런 사람들이 송달료도 안 내고 본인이 소장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일부러 송달도 안 받고 계속 소송 지연시키거나 그러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정 시간,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송달하거나…… 그런데 지금 피고에 대해서, 글썽요,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어떤 정도냐면 그 1인, 지금 연간 한 사람이 한 2만 건 이상 특정 상대방한테 막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초반에 제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소권 남용에 해당은 안 되지요. 그건 송달을 다 하는 것이고,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 소장부분 받으면 지겹지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이걸 정말 좀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더 이상 피고한테 안 보내고 이렇게 공시송달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기준이 불명확해지는…… 법원이 볼 때는 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로서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내가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더 내가 지켜보고 어느 시점에서 오히려 피고가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이 뭐 소송을 하든 나는 받아 보기 싫다고 하는 시점을 결국은 법원이 사실은 보호자적 입장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보호해 드릴 테니까 안 보내도 되겠지요’라고 그냥, 그거는 법원이 직접 알아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그런 예외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것입니다마는 법원이 언제부터 소권 남용으로 보고 피고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피고는 이런 걸 이제는 모르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언제쯤 하실 건지 그건 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기준으로써는 좀……

○장동혁 위원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정점식 위원** 다른 건 다 동의를 합니다.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게 객관적인 기준을 그러면 규칙이나 이런 데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정점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권한이 강한테 모든 걸 재판부한테 다 맡긴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부에 따라서 ‘완벽하게 동일한 소송이네. 청구 원인하고 청구 취지가 똑같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면 그대로 그냥 두 번째 소송도 ‘이건 남소다’ 하고 각하하겠다는 이런 취지, 각하하는 사례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1인당 1년에 2만 건 이상씩……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소위 남소의 범위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민사소송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특정을 해 줘야지 재판장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면 그게 선뜻 이해가 됩니까? 그 방안을 한번 강구……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판사들끼리 소권 남용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정점식 위원** 그렇지요. 세미나 같은 것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하고 나서 이것 하면 됩니다.

○**유상범 위원** 차장님, 보통 이렇게 남소되는 경우가, 보통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특정인이 2만 건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나누어질 텐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보통은 이 사람들이, 병합이 됩니다. 병합이 돼서 재판부당 1건에 한 1000건씩 붙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유상범 위원** 동일 피고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게 쪽 병합이 돼 가지고 우리 재판부 미제가 300건이었는데 갑자기 1300건으로 확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하나 들어왔다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기피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패소 판결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뭘 하나면 담당 판사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얹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한 1000건씩 제소를 딱 하면 배당할 판사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소당한 사람은 빠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판사한테 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차장님 말씀을……

○**유상범 위원** 장 위원, 안 끝났어요.

(웃음소리)

정확하게 남용이라는 것이 여기 말씀대로 대법원에서는 판단 기준을 정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또 남용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남용의 판단을 주관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판사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나중에 결국 이 판단에 실질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아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규칙에서 그와 같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 영국에서 지정한 내용 또 미국에서 한 내용이 굉장히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부분은 지금 12페이지의 법무부 의견 중간 부분에……

○**유상범 위원** 아니, 이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있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판결로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만 가지고, 말씀대로 아주 뚜렷하게 어떤 사안이 드러나는 게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잖아요. 서너 건을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도 있을 수 있고……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지는 않지요. 서너 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서너 건 가지고도. 그런 판단을 못 하나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원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소해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고요.

○**유상범 위원** 영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에서 지적인 부분?

○**정점식 위원** 15페이지.

○**유상범 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 영국에서 부당소송이라고 기준으로 정리한 이런 내용,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주는 게 나중에 재판하시는 판사님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해요,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면 워딩을, 사실 영국의 그런 표지적 접근과 지금 우리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이 유사하거든요. 유사한데……

○**유상범 위원** 비교적 유사하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면 소권 남용이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문제의식에는 다 공감하지만 조금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는 거니까요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소위원장 기동민** 다음이요.

○**전문위원 심정희** 다음은 소위 자료 18페이지입니다.

부당소송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입니다.

여기도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항소권 남용해도 마찬가지고요.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것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 같은 경우 19페이지에 보면 민소법에 과태료 조항이 200만 원, 500만 원짜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00만 원의 경우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당사자 신문 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 이런 경우 500만 원인데 이 기준에 맞춰서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낮출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이 조문을 수용하신다면 총칙 편에 1개 조문으로 간

결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의견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부당소송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의견 주셨듯이 총칙 편에 1개의 조문으로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개정안의 과태료 규정이 상고심까지 적용되지는 않고 민사소송법상 다른 과태료 규정이 다 해당 부분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는 기동민 의원안처럼 과태료 규정을 두는 것이 체계의 정합성으로 더 좋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법원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우선 과태료 액수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고요.

과태료 조문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만 원안대로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고, 이것은 어차피 체계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의견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건건이 5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이 조항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반복적으로.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2만 건을 한 사람에 건건이 500만 원씩 부과하면 얼마를 하겠다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보통은 한 1000건씩 한꺼번에 하니까 그게 이제 1회로 상상적 경합이 되겠지요.

○**유상범 위원** 형사 사건도 아닌데 무슨 상상적 경합이……

그런데 과태료를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진 각국에서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남소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건건이 할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자체를 말씀대로 1000건에 1건 할지 어떤 모양새, 어떤 나름대로

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기준으로 하면 1건마다 500만 원씩 한다는 규정이거든요.

○정점식 위원 제가……

끝났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점식 위원 답변할 것 없습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정점식 위원 우선 조금 전에 소권 남용에 대한 219조의2, 413조의2 이것을, 민사소송법 전체 체계를 한번 봅시다.

219조가 들어 있는 것은 제5절 재판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413조가 들어 있는 것은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그 뒤의 제3편 상소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지요, 조의 위치가.

만일 제재 조치를 넣으려면 1편의 재판의 위치에 적절하게 조문의 위치를 찾아 가지고 1심과 항소심을 같이 규정해야지, 1심에 대해서는 제1심의 소송절차 이전의 재판이라는 절에 넣어 두고 항소심은 제3편 상소 부분에 이렇게 넣는다는 게 조문 체계가 안 맞아요. 그 부분도 법원에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저희는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는 게 아니고, 219조가 뭐냐 하면…… 내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본법을 이렇게 자꾸 그냥 절차만 도입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원에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조문의 위치까지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219조가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고 그다음에 220조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는 외국 입법례도 있고 하니까 저도 이의는 없는데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전체적인 민사소송 절차 체계상 맞는지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재판 편에 같이 1개 조문으로, 20페이지에 넣어 봤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전문위원 심정희 지금 말씀하신 총칙 편에 해당되는 재판 절차에 1개 조문으로 들어가는……

○정점식 위원 그중에서도 어느 조문 뒤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기동민 검토해 주시고요.

김남국 위원님.

○권인숙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남국 위원 예.

○권인숙 위원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기보다는 부당소송인에 대한 명단 공개 같은 방식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금전적 제재가 여러 가지가 도입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제재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여기는 제재 있는 나라만 몇 개를 골라 놓은 상태고.

연방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부당소송인 규제법,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된 주장 삭제하거나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경고하거나 아니면 세미나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명하거나 문제된 사안을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등에 회부하거나 법원이 해당 소송대리인이 속한 법무법인 소속의 모든 변호사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변호사윤리 문서와 함께 배부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6개월간 특정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의 대리를 금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호사에게도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비금전적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의 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고민들, 그러니까 비금전적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려를 안 하셨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소송 현실을 생각하면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과태료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권인숙 위원 제일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사실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한한다든가 또 이런 분들을 어디다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정점식 위원 차장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소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없지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소송 구조상 최소한 1건당 몇 십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남소를 하는 사람들이 한 건당 최소 사오십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선임료를 지급하면서 1000건의 남소를 한다,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5억인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직접 소송 수행하는 거지, 원고자.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대부분은 다 직접 소송 수행합니다.

○**권인숙 위원** 부당소송인 공개나 이 소송 절차상에서 제재 방법…… 이런 변호사 쪽으로 몰리지 않고 당사자 관련해서 비금전적 제재하는 방법들은 적용하기 힘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사실 이런 분들 중에 법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효성……

○**권인숙 위원** 실효성에서 문제가, 별로 효과가 없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이 조항은 바로 수정이 좀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총론적인 재판 전에 넣어서 남소 과태료 할 수 있는 부분, 부과 부분은 그렇게 219조의2 형태로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변론 없는’.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2항으로 넣는 것은 형식이 조금 안 맞고 그래서 219조의2로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정점식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장님, 하나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다음에 넘길 게 아니라 문구만 조금 더 수정할 수 있으면 아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점식 위원** 지금 앞에서 소권 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김남국 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문구를 정리해서……

○**정점식 위원** 194조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같이 해야 되는……

○**김남국 위원** 부적합한 소가 아니라 지금 소권 남용 부당소송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 앞부분 검토할 때 같이……

○**김남국 위원** 예,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한 사람이 2만 건 했더라는 그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특이한 한 사람을 놓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맞을지 그것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폭넓게 보장하는 게 맞는데 그 특이하신 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권 남용과 관련된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1인당이고요. 이런 분들이 좀 상당수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법원에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기동민**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차장님께 저는 법안 심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김남국 위원님의 지적에 일부 공감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저희가 물으면 차장님은 항상 저 극단에 있는 한 예만 가지고 그걸 다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는지 해서 저희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권 남용 사례가 대체로 어느 정도고 소권 남용으로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게 1년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통계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략 몇 건 정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실 때 몇천 건이 오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하지만 유상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여기저기 재판부가 나뉘져 있어서 사실은……

물론 그분의 이름으로 검색해 보면 알지만 또 지방, 법원이 나뉘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금 극단에 있는 한 건을 가지고 이런 모든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다른 건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 재판부 숫자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고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보다 더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이런 흐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총론에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총론을 어떻게 각론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더 풍부하게 고민하고 근거들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유념해 주시고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21페이지입니다.

부당소송 방지를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3개의 법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지법 개정안의 경우 일정 금액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그에 따라 민소법에도 소장 접수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이고, 민소 전자문서법도 인지법에 따른 소 접수 보류 절차에 대응하여 접수 확인 절차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악의적인 부당소송의 반복 및 소송 절차의 지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소 인지액 기준으로 직원에 의해서 소장 접수 거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절차 등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구체적인 요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우선 인지법입니다.

최소 인지액을 설정하고 소장 접수 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인지법 13조에 보면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규정이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부적법하고요. 보정 명령을 거치면 적법하게 됩니다. 2항을 신설하여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장, 민소법 79조·83조에 따른 참가신청서, 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면 1000원, 3000만 원 초과해서 5억 이하면 1만 원, 5억을 초과하면 5만 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우선은 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지법의 개별 규정의 2조의 소장에 한정되는지 3조에 따른 항소장·상고장, 제4조에 따른 반소장, 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장 접수 보류의 기준이 되는 최소 인지액 1000원, 1만 원, 5만 원 부분의 금액과 관련해서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의 최소 인지액 1000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단독 관할 5억 원 이하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최소 인지액 기준이 임의적인 금액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접수 보류의 의미에 대해서 접수 보류는 담당 직원이 국민이 제출한 소장을 수령은 하지만 접수하지 않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일정 기간 최소 인지액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 직원이 해당 소장을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절차적 사항을 위임하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노공**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법원 의견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 보류 대상 서류 관련해서는 준재심 소장의 경우는 재심소장에 준해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접수 보류 기준 최소 인지액 산정 방식은 이걸 좀 그 최소 인지액을 얼마를 붙여야 되는지 당사자한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금액을 뭔가 이렇게 1000원, 1만 원, 5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하는 데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서 부작용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접수 보류를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보류에 대해서는 그 의미는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등 접수 절차까지는 안 나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의미가 명확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접수 보류된 서류를 어떻게 반환하고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그 법적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이 있는데요. 24페이지에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질문할까요?

○소위원장 기동민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차장님, 아까 소송구조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차장님 하시는 말씀이 소위 인지대와 송달료 등에 대해서도 소송구조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인지대가 없어서 접수가 보류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구조가 가능합니까, 이 제도를 두면? 접수가 안 됐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접수가 안 됐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정말 피해는 보상받아야 되겠고 돈은 없고 해서 소송구조를 신청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소송구조조차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걸로 들어가면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1000원, 1만 원 이 정도여서……

○정점식 위원 그것하고 같이 생각을 하자, 금액하고.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 소권 남용, 제소하는 분들은 인지대도 안 내고 송달료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붙이십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차장님, 그러면 여기 법문에 ‘접수한 때’라고의 접수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점이?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접수를 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장동혁 위원 사건 번호가 부여될 때를 말하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장동혁 위원 그러면 소장, 예를 들면 종이 소송 같은 경우에 소장 접수하면 접수인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수인을 찍어도 당사자는 그걸 보고 접수됐다고 믿고 가도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된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당사자가 소장을, 소송 서류를 내면 우리 직원이 서류를 심사해서 접수를 하게 되거든요. 접수를 할 때 그때 사건번호하고 사건명 이런 것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는 거지요. 도장 찍을 때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고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도장을 찍으면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지요.

○장동혁 위원 그러면 ‘사건번호가 부여될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차장님, 보니까 이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게 접수를 하는 순간 남소를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반복적으로 남소가 진행되는 게, 들어가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사실은 그 절차에 들어가는 걸 사전에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지금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접수 보류 제도……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지요. 원래 소 제기할 때는 당연히 인지 다 내잖아요. 내는데, 한 푼도 안 붙이고 내니까.

○유상범 위원 접수를 하면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후속 절차를 취하는데 계속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서 반복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 게 반복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소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에는 총론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조문으로 만들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의식들은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고요. 무작정 미루지 말고 이것도 다음번 법안소위가 열릴 정도 전까지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오후에는 이것은 조금 뒤로 미뤄 놓고요. 14항·15항·16항, 이후의 과정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다음 과정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고생들 하셨고요.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기동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부제로 ‘만 나이 관련’이라고 표시된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민법 개정안 2개가 있고요 행정기본법 개정안 1개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민법에 연령의 계산 및 표시 방법을 명시하는 안입니다.

개정안 2개는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요. 공통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 박광온 의원안은 만 나이라는 표현의 명시 없이 연수와 월수의 병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유상범 의원안은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1세 미만일 때만 월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내용에 보시면 박광온 의원안 조문 보시면 지금 현행 158조를 개정하는 건데요. ‘연령의 계산점 등’ 해서 조 제목을 넓히고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2항에는 ‘연령을 표시할 때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연수를 계산하고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에 포함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월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연수와 월수로 병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항은 ‘연령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항은 현행 155조와 중복되는 부분이라 박광온 의원안의 3항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님 안을 보시면 제158조를 똑같이 개정하는 내용이고 조 제목은 ‘연령의 계산과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1항 ‘연령의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항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드리면, 3페이지입니다. 현행 문리 해석 및 논리 해석상 만 나이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주·월·연 단위로 정한 때에는 역법적 계산법을 따라야 하고 초일 불산입 원칙 아래 제158조와 같이 연령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연령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문리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의 다른 성년 연령이라든가 혼인적령 등의 조문에서 연령을 출생일 이후 다음 연도의 출생일 전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연수로 표시하도록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 해석상 만 나이 방식으로 연령을 표시해야 됩니다.

개정안은 민법 제1장(총칙) 편 제6장(기간) 내에 연령 계산 및 표시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생활에서도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의 정비와 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의 정비에서는 유상범 의원님 안을 보시면 1항에 ‘만 나이로 계산한다’, 2항에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라고 해서 연령의 계산 방법이 1항, 2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연령의 계산 방법을 2항에는 표시 방법만을 규정하는 것이 간결한 법문 표현에 바람직해 보이고요. 2항에 ‘연수로 표시한다’는 것은 연령을 계산하게 되면 ‘출생일 이후 몇 년 몇 월 몇 주가 지났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월수와 주수는 버리고 연수만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월수의 병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박광온 의원님 안과 유상범 의원안이 나뉘어져 있는데 유상범 의원님 안처럼 1세 미만인 경우에만 월수로 표시하는 것이 간결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그다음 날에 종료되는 것으로 현행 161조에 계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나이는 제외하는 게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문에 나이를 표시할 때 ‘만’이라는 음절을 넣어서 표시하는 경우와 ‘만’이라는 음절을 넣지 않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유상범 의원님 안처럼 ‘만’ 표시 음절을 빼고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이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을 마지막 칸에 실었습니다. 158조 1항, 2항을 의원님 안처럼 그대로 두되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만 1항으로 올려서 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노공 만 나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있고 또 제각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법무부와 법제처가 상당히 논의를 거쳐서 협의한 두 가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1안입니다. 이 부분은 ‘연령의 계산과 표시’ 해서 한 조문으로 해서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만 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어떤 정확한 정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령에 대해서 연수로 표시한다고 하면 나이에 부합하는 만 나이라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1안의 취지는 민법 제160조가 ‘역에 의해 계산을 한다’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일 산입의 취지만 규정하면 만 나이로 계산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2안입니다. 이 부분은 ‘연령’이라는 부분을 ‘나이’로 바꾸고 ‘나이의 계산과 표시’라고 제목을 정하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2안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 조항의 나이 계산법이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만 나이라는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좀 쉽게 알 수 있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다른 조항과 다른 법에 ‘연령’이라고 하는 규정들이 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로 민법의 기본법을 바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있어서도 연령 부분에 대한 수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법무부 의견 1안과 법무부 의견 2안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하기 좀 쉬운 표현으로 보면 법무부 의견 2안 쪽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안으로 해도 관계없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차관님, 158조를 ‘나이의 계산과 표시’ 이렇게 하지 않고 ‘연령의 계산과 표시’ 이렇게 해도 제목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유상범 위원 연령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나이잖아, 풀어서 하면.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바꾸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법무부차관 이노공 결국은 제목을 바꾸지 않으면 연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문 문안에 처음에 ‘나이는’ 이렇게 조문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연령으로 할 것이냐 나이로 할 것이냐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령과 나이는 같은 개념은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다른 조문에 다 연령, 옛날 한자체로 연령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것만 나이로 바꾸면 법체계상 모양이 좀 그러네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 1안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 1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과 나이가 같고 ‘만 나이’ 이런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이해를 좀 돕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2안도……

저희도 이게 틀렸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이 두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할 생각입니다.

○**유상범 위원** 법제처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저희들은 법 조문에 ‘만 나이로 계산한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지금도 해석상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착이 안 된 이유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법 조문에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부분이 없으니, 어느 조문을 봐도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진짜 만 나이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는 나이로 해야 되는지 그게 정착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 조문에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만 나이 계산법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안을 지지합니다.

○**정점식 위원** 법제처 차장님, 지금 우리 소위 단속 법규 이런 데 보면 연 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조문에 연 나이라는 문구가 있나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조문에는……

○**정점식 위원** 없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특별히 ‘연 나이’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법제처차장 김창범** 1월 1일부터……

○**정점식 위원** 혹시 지금 기억나는 조문이 있습니까?

○**법제처차장 김창범** 연 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점식 위원** 연 나이로 규정된 법.

○**법제처차장 김창범** 연 나이로는 병역법에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저희가 서치한 바로는 연 나이로 되어 있는 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정의 규정이 있고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병역법……

○**정점식 위원** 청소년 보호법 2조.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2조 1호.

○**유상범 위원** 어떻게 규정돼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병역법에도 보면……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

○**정점식 위원** 여기에도 ‘만’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을 한 선례가 있기는 있네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또 병역법의 2조 정의

에 보면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몇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연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이의 계산과 표시’라 그러지 말고 ‘연령의 계산과 표시’라고 하고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면 어떨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순정** 기조실장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목에 ‘연령의 계산과 표시’ 한 다음에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하면 한 조항 안에 연령이란 나이라는 용어가 혼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왕 바꿀 거면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

○**정점식 위원** 만 나이라는 용어……

○**김남국 위원** 뒤에 한 번 더 만 나이가 나오네요.

○**정점식 위원** 앞에는 연령이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뒤에는 나이라는 한글을 사용하고……

○**유상범 위원** 한글을 사용하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순정**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것은 또 지적이 맞기는 맞네요. 그러면 하려면 차라리 2안으로 가는 게 낫겠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순정** 2안으로 가면 좋은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뿐만 아니라 민법 안에도 연령이라는 단어가 살아 있는 조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바꾸실지는 여기 법사위원들께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하나씩 바꾸는 것도 무방해요.

○**권인숙 위원** 바뀌 나가면 될 거예요, 하나씩 차차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소위원장 기동민** 우리말 쓰는 게 대세고 추세인데……

발의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민법에 보면 801조에 ‘약혼연령’ 이렇게 돼 있고요. 또 817조에 보면 ‘연령위반혼인의 취소청구권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연령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다른 법률이나 민법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사용하기는 하는데 사

회적으로 연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요, 실제로?

○권인숙 위원 안 쓰지요.

○유상범 위원 이미 나이라고 다 통일해서 쓰고 있고……

○권인숙 위원 다 나이로 통일돼 있지요.

○소위원장 기동민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혼용하다가 나중에 정리가 될 텐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유상범 위원님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처음에 법제처에서 이렇게 했듯이 이 나이의 개념이 굉장히 혼용해 와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나이가 만 나이라는 것의 선언적 의미를 주게 되면 앞으로 그것이, 국민적으로도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이미 만 나이 법이라고 여론에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안으로 가는 게 좋다는 입장이고, 또 소위 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른 법률에서 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안으로 진행하시는 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점식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민법에서 연령이라는 걸 쓰는 게 팔백몇 조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801조입니다.

○정점식 위원 801조?

○유상범 위원 807조에도 있는데……

○권인숙 위원 807조 아니야?

○정점식 위원 그것은 적령이라는 용어고 801조가 약혼연령이라고……

○법무부차관 이노공 801조와 817조입니다.

○유상범 위원 연령이라는 게 일본식 한자 아닌가요, 실제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법제처차장 김창범 일본, 미국 등에서 쓰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요즘은 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니까 혼용하다가 나이로 다 대체해야지요.

○권인숙 위원 ‘네 연령이 몇 살이니’라고는 안 묻잖아요.

○소위원장 기동민 그럼요.

○권인숙 위원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정점식 위원 지금 연령으로 돼 있는 것을 차관님이 민법상으로는 다 찾아보신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저희가 다 검토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몇 개 조문에 있는지, 세 개 조문밖에 없어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연령이라는 표시가 두 개……

○정점식 위원 그냥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한꺼번에 같이 개정해 버리면 안 되나?

전문위원님,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 심정희 민법에 있는 ‘연령’을 모두 ‘나이’로요, 다른 조문에 있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817조 조문의 제목에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라는 게 있고 801조에 ‘약혼연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다 제목에 들어가는 말인 것 같고, 아까 또……

이 두 개 조문밖에 없습니까,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저희가 찾았는데 두 개로……

○전문위원 심정희 837조에 연령이라는 표현이……

○법무부차관 이노공 837조에도……

○전문위원 심정희 837조 3항.

○소위원장 기동민 차제에 다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전문위원 심정희 그런데 간사님, 연령은 한자어고요 나이는 한글이기 때문에, 뜻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조문까지 크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기본법의……

○유상범 위원 기본법을 바꿀 때 연령을 나이로 바꾼다면, 똑같은 거라면 이 기회에 같이 바꿔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기동민 그러시지요.

○정점식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조문 부분은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서 민법의 다른 부분, 요즘은 검색만 하면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걸 해 가지고 전체회의에 상정할 때는 다른 조문도 같이 연령을 나이로 바꾸는……

○전문위원 심정희 나이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지고 두 개 이외에 더 있는지 해서 자꾸 정리할 때 도움을 좀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심정희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잠깐만, 그러면 1061조에 보면 ‘유언적령’이라는 게 나와요. 만 17세가 되니까 이 규정은 만 자를 빼야 되겠지 그때는, 조문을 정리하려면.

○전문위원 심정희 예,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유상범 위원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래서 의원님 안에 이미 담은 내용이라 158조는 법무부 2안처럼 정리하고, 161조 그리고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음절을 다 빼고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예.

○법무부차관 이노공 161조는 기존의 현행법으로 그냥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안은 저희가 봤을 때 좀 불필요하지 않나……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안을 보면 161조는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이래서 여기에다가 기간에 ‘연령을 제외한다’ 이렇게 굳이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나이의 만료점이라는 건 사실 개념 자체가 설명하기 어렵고 굳이 이런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그런데 연령이라는 것이 법문에 풀로 전체적으로 계산 방법이나 표시에 들어가는 건데……

○법무부차관 이노공 이 제목에 ‘공휴일 등과’……

○정점식 위원 이것은 제목 자체가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계약에 있어서 이행기일 문제 때문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괄호 안에 ‘연령을 제외한다’ 이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심정희 예, 이걸 빼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제목 가지고 조문이 해석이 되니까.

○전문위원 심정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다음이요.

○전문위원 심정희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및 표시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만 나이로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안에 보면 제2절 ‘기간의 계산’을 ‘기간 및 나이의 계산’으로 절 제목을 바꾸고 제7조의2를 신설해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1항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 2항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면 민법과 같이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를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1항에는 이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민법의 일반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준용을 하지 않고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준용 방식을 택해서 민법 개정 내용을 준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정부 의견 주세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행정현장에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되고 있어서 행정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는 부분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민법에서 한 조문으로 합쳤듯이 그 점을 감안하셔서 유상범 의원님 안을 토대로 민법에 법무부 2안 그 부분이 체계가 담기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7페이지 법제처 의견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제목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과 표시’, 1항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 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대한 홍보 책무를 주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이 조항이 있으면 만 나이 정책을 끌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법
제처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고맙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법제처차장 김창범 위원장님, 하나 제안설명
드릴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예.

○법제처차장 김창범 여기 표현이 7조의2에 보
시면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한
글화를 시켰는데—민법에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로 돼 있어서 편찮으시다면 이 부분도 좀 민법하
고 맞춰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
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민법을 바꾸는 게 낫겠네요.

○권인숙 위원 예, 이게 어려워요, ‘출생일을 산
입하여’가 더 어려워요.

○유상범 위원 어떤가요, 차장님?

○법제처차장 김창범 그 뜻은 똑같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노공 일단은 민법에 있는 대로
표시하는 것이 좀 더,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정점식 위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라
는 용어가 민법에, 다른 조문에도 다 들어 있습
니다.

그런데 법제처차장님!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정점식 위원 이게 지금 민법에서 나이 계산
방법을, 만 나이의 규정을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다가 다시 행정기본법에서 민법에 있는 규정을
똑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법제처차장 김창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점식 위원 일단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만
나이가 왜 정착이 안 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민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 분야에도 마찬가
지인데 과거 1961년도에 벌써 민법에서는 다 만 나
이로 한다는 게 해석상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송요찬 내각 수반이, 만 나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정점식 위원 잠깐만, 아니 내가 지금 유상범
의원님의 7조의2 1항, 만 나이로 한다라는 부
분은 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법에 이

미 만 나이의 개념하고 소위 계산 방법을 규정해
놔는데 여기 행정기본법에서 2항·3항처럼 만 나
이 계산법을 다시 나열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뜻, 이 말입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안 그러면 여기서 준용을
해야 되는데 준용하는 것도 집행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 관한
기본법은 행정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고 바
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만 나이의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서 그 부분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남국 위원 준용하는 거나 바로 이렇게 기본
법에 표시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내용은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래서 명확히 한다라고 하면 기
본법에 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들고요.

그런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체계상
이나 내용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행정법학자
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흠결이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
아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그 지적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김남국 위원 이것 안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또 적극 알릴
생각이시고……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간혹,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것 또한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들
은 일단은 만 나이가 정착할 때까지는, 나중에
없애더라도 만 나이가 정착할 때까지는……

○김남국 위원 이게 법체계상 봤을 때 ‘홍보해
야 된다’ 이런 내용이 조문에 들어가는, 그것도
행정기본법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하
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 아니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초기에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
에서 좀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
이기 때문에 3항은 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말씀을 좀 보태 보면요, 인
수위에서 잘한 일이 많았지만 가장 국민들한테

평가받은 사안들입니다. 굳이 이렇게 적시하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대환영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사족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2항은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권장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기본법 조문 형식으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법제처차장 김창범** 조치를 해야 된다면 그 조치가 뭔지가 조금 혼선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김남국 위원** 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권인숙 위원** 이것은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규정 자체가 사실은 조문 안에 존재하는 것 자체도 형식에는 안 맞거든요, 입법 형식에도.

○**법제처차장 김창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적절히 노력하고……

○**유상범 위원** 2항은 빼 버리는 걸로 하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삭제하는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제가 첨언하면 김남국 위원님이나 권인숙 위원님 다 지적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문을 사실 거기다 다시 병기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는 적절치 않고 행정기본법도 기본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민법을 준용하니까 민법 조항을 더 기재하면 좋은데 ‘행정에 관한 나이와 계산’을 해 놓고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민법 제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시 그 법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법이 갖고 있는 특성은 가장 준거가 되는 개념 정리를 해 놓는 건데 그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기본법이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복된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남국 위원** 저도 유상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준용하면 또 법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찾아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직관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 말고 그냥 국민들이 찾아보기에는 적시를 해 주는 게 저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동의합니다.

○**정점식 위원** 그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기본법 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①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

○**김남국 위원** 거기에 또 문제가 있네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기간의 계산하고 나이의 계산하고 이게 조문 형식이……

○**김남국 위원** 체계가 안 맞네요.

○**정점식 위원** 다르니까 계속 아까 나도 이야기를 한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장동혁 위원** 그런데 조문에 5조 1항도 있습니다. 5조 1항도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서 정한 게 없으면 민법으로 가는 것이지 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정점식 위원** 7조의2 2항 없애고, 아까 법제처 의견 안에서 그냥 7조의2를 항을 없애고 그냥 그것 자체로 7조의2.

○**유상범 위원** 7조의2로 우리도 준용하는 걸로 정리합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기동민** 그러실까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그러면 다 정리된 거지요?

○**전문위원 심정희** 그러면 시행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위법령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할까 합니다.

○**김남국 위원** 법무부나 법제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어떤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법무부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저희들도 6개월 동안 기간을 거쳐서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아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제처차장 김창범** 그러니까 원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6개월 정도 정비가 필요하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아닙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정비가 필요한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유상범 위원** 이게 지금 이 법을 딱 규정을 하면 각 행정부처에서 거기에 따른 서식 같은 것도 많이 바뀔 거거든요.

○**김남국 위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민법은 사실은 다른 특별한 게 필요 없고, 그러니까 민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행정기본법은 6개월로……

○**김남국 위원** 그런데 그것도 혼란스럽잖아요. 민법하고 행정법하고 시행 시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시행 시기를 좀 일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점식 위원** 왜 그러냐면 민법은 사실상 상징적으로 만 나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지, 민법에 적용되는 모든 법은 지금까지도 다 만 나이로 했기 때문에 혼란이……

○**권인숙 위원** 바꿀 게 없다는 거지.

○**김남국 위원** 그렇더라도 저희가 같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니까 함께 일치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상범 위원** 행정처 입장은 어때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행정처 입장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금 여유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6개월로 하십시오.

○**김남국 위원** 6개월로 둘 다……

○**전문위원 심정희** 2개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회장 기동민** 차구나 조문의 정리는 좀 맡겨 주시고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까지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송기현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은 세 차례의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고심 판결 선고 후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는 사항입니다.

송기현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고 특별검사 등은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주혜 의원안은 특별검사 등의 권위시 상고심 판결 선고 후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마찬가지로 검찰에 인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사건 인계 시에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한 9조를 준용해서 판결 확정 시에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기현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은 박영수 특별검사 퇴직 전에 발의된 법률안으로 특별검사 등이 2021년 7월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 관련 내용의 심사는 불필요합니다.

전주혜 의원안은 2021년 7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퇴직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사건의 수사과 기소가 오래전에 마무리되었고 대부분의 재판이 확정되어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일한데 이 사건은 2020년 1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개정안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

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한다'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특별검사 등의 퇴직으로 인계 조치가 부재함으로 '해당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부칙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2021년 7월에 특별검사 등이 중도 퇴직함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개정안을 만약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고심 판결 선고 후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검찰에 인계한다는 각 안의 공통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정부 의견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지금 송기현·백혜련 의원님 발의안은 현재 특검과 특검보가 퇴직을 하여서 조문상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발의안은 국정농단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고 있는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가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문상으로 보면 특검과 특검보의 사임으로 사건을 인계할 주체가 없으므로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한다' 부분을 '해당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법원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도 수정의견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송기현 의원님 안하고 전주혜 의원님 안은 모두 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져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요.

백혜련 의원님 안은 그중에서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가 들어가는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파기환송심에서 특별검사가 해야 될 실질적인 임무와 역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달리 취급해야 된다는 의견 그 앞의 말씀을 내가 못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저거지요.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안 중에 2년 경과하면……

○정점식 위원 예, 수정……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수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정점식 위원 지금 현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승계하는 것은 안 맞고 그냥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게 수정의견이……

○정점식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고등·지방의 구분이 없으니까, 소위 관할이라는 것은 앞에다 관할 법원의 대응 검찰청이라는 의미로 하니까 그냥 지방을 빼고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라고 표현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기동민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유상범 위원 지금 유일하게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것만 남아 있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분이 퇴직하기 전에 이 법안의 개정의견을 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개정이 안 되니까 그냥 사임을 해 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빨리 개정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법률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2쪽입니다.

구조금의 지급신청기한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구조금 지급신청기간 이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신청권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DNA 증거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석준 의원안의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증거가 발견된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4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신청기한이 도과한 이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신법 시행 당시 신청기한이 도과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신청기한 도과 이후 증거가 발견되어 범죄로 인한 피해임이 증명된 범죄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 구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구조금 지급신청에 기한을 두고 있어 해당 기한이 도과하면 구조금 지급신청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그 예외를 두는 경우 법률관계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사유 및 그 기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홍석준 의원안의 경우 예외적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이 무엇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칙의 적용례의 경우 신법 시행 당시 이미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신법 시행 당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도 이미 도과한 경우에는 동 적용례에 의해서도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소급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노공 법무부 의견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두 의원님 안 모두 구조금 신청기한이나 기산일 산정과 관련해서 관련 문구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법원행정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일단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구조금 지급신청기간의 예외규정을 둘 것인지 그것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구조금 지급신청기간은 성질상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에는 예외를 잘 안 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척기간의 취지하고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개정안들은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의 범위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제척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에는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상 제척기간의 의미가 희박해지게 되는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제척기간의 성격과 좀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나는 이 내용을 보고는 어떤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아까 10년이 지나서, 여기 태영호 의원안처럼 10년이 지났는데 DNA 증거로 예를 들어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자가 입증된 경우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거지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니까 지금 홍석준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건

발생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와 같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제안이유가 돼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것은 범죄피해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이게 자연사나…… 그 케이스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그 케이스와 별개로 내가 범죄피해자가 됐다고 했을 때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아도 이것 구조금 신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차관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맞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게 지금 범조문상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으로는 가해자가 없는 범죄피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DNA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해자를 나중에 발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느냐……

○권인숙 위원 있겠지요.

○정점식 위원 이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범죄피해로 인한 거다, 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을 10년 뒤에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라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런 케이스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소위원장 기동민 먼저 말씀 듣고 그다음에 장동혁 위원님 말씀 들을게요.

○장동혁 위원 제가 같이 해서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예, 하십시오.

○장동혁 위원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 실종된 지 몇 년 됐고 휴대폰 기록이나 카드 사용내역이나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의 사망했을, 그러니까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해서 몇몇 간접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기소가 되지만 시신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의 발의가 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그 이후에 사망된 것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미 10년이 지나 버린 상황이어서,

다만 아까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이미 3년 지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범죄피해 사실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알지 못했다, 안 날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시신이 발견된 날이 범죄피해 사실 확정된 날이고 그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문과의 충돌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들이 제가 상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 중의 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홍석준 의원께서 개구리소년 말씀을 하셨는데 3조를 보면요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범죄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중상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사유는 충분히 납득할 부분이 있지만 구조대상 범죄 자체의 개념에도 포함이 안 되는……

○정점식 위원 그쪽은 대한민국 영역 밖, 앞에……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앞쪽에 영역 안에서, 따로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 영역 밖이구나. 잘못 봤군요. 열심히 보다 보니까 잘못 봤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이 범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장동혁 위원 필요성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기동민 금방 말씀 주신 부분들 조금 더 검토하고 조사해서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그리고 원래는 오전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점식 간사님 등 많은 분들이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가지고요 그것을 지금 토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법사위가 지금까지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즉 소위들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토론했어요. 여야 간에 정세 인식의 차이라든지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안이든지 아니면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하고 상정되지 못하고 토론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인데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역시 제가 여당 위원님들께 무슨 강행 처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는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소위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고 정치적 오해도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처의 의견들을 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인권위원회는 법무부는 혹은 법원행정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꼭 한번 얘기를 들어 보고…… 말씀을 들어 보면 쟁점이 한 열 가지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 쟁점에 대해서 부분 부분별로 토론을 진행해서 여야가 공히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혹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에 직면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법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음을 갖고 제안을 드렸는데 상정해서 토론하기에 아직까지는 공론화 작업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수준 정도가 낮다는 판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아서, 또 2007년도 이후부터 한 일곱 차례 정도 꼭 발의가 되어서 토론이 되었고 그리고 21대 국회가 출발한 지 상당히, 과반수 이상이 지났는데 한 4건의 법률안 정도가 제출이 되었어요. 2020년 6월 29일에는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차별금지법안, 2021년 6월 16일은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 21년 8월 9일에는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 21년 8월 31일은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청원도 6건이나 있고요, 거기에는 반대 5건, 찬성 1건입니다.

20대 국회 이전에는 전체회의 법안 상정 외에 특별한 논의가 없었고요,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최초 상정이 되고 제정 필요성 등을 대체토론 했습니다. 22년 4월 26일 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고요. 공청회 일시, 진술인은 추후에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22년 5월 20일 1소위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는데 전체가 함께하지 못한 것이었고요. 22년 5월 25일 1소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의견들을 듣는 데 그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꼭 들어 보고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리고 법원이라든지 법무부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정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예, 정점식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소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과정에서 토론 또는 의견을 듣겠다 하는 부분도 이 역시 안건의 하나로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법에 있어서 안건은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은 기본적으로 간사 간 협의에 따르고 지금까지 법사위 또는 법사위 소위에서 이루어진 소위 안건들은 다 합의를 한 경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합의 없이 상정된 경우는 다수당이 그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상정한 경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이런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간담회 형식이라면 모르겠으나 소위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장동혁 위원 존경하는 기동민 소위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소위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셨고 또 산적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소위를 잘 운영해 오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1항부터 21항까지 간사간에 협의된 내용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기관 참석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회의장에 들어올 때 의사일정과 소관기관 참석자 명단을 보고 이에 기해서 오늘 의사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사전에 협의 또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 올라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진짜 1소

위를 원만하게 운영해 오셨던 기동민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저는 이전부터 평등법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기동민 간사님이 안건 상정도 없이 의견을 들어 보자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약간 좀 실망하는 입장이고요. 강행 처리라는 것이 지금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구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조차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신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상정도 못 하나 이런 말씀, 강한 질타신데요. 금방 장동혁 위원님 말씀 주셨고 정점식 간사님 말씀 주셨듯이 사실 법사위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워낙 싸우는 곳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토론해서 진행하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위해서 노력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57조제8항, 제49조에 따르면 소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 동의하지 않으시는데요,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점식 위원 저희들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고 지금 협의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정부 부처도 참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당장 법무부는 나가세요.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부처에 대해서 이러라저러라 그렇게 주문하지 마시고요.

○정점식 위원 나가세요.

○소위원장 기동민 국민의힘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정상적인 회의절차에 응하실 수 없으면 그 나름대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점식 위원 회의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차관님, 정식 회의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회의 끝났어요, 나가요.

○박주민 위원 산회를 하지 않았잖아요,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지금 산회하자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소위원장 기동민 정식 회의가 종료되지 않았어요.

○정점식 위원 아니, 산회를 하고 하시든지 하시라고요. 왜 정부 부처를 앉혀 놓습니까?

○소위원장 기동민 지금 무슨 민주당 차원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점식 위원 정부가 무슨 인질입니까?

○소위원장 기동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위원 차관, 일어나세요.

○권인숙 위원 상정을 하고 하지요.

○소위원장 기동민 법무부차관!

○권인숙 위원 상정하고 합시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상정하세요, 하시려면.

○소위원장 기동민 앉아 계세요.

○정점식 위원 일방적으로 상정하시라고.

○김남국 위원 일방적으로 상정이 아니라……

○정점식 위원 차관, 일어나요.

○김남국 위원 저희가 사실 이 법안이 제출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지난 6월이었지요, 그때 공청회 한 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거 직전에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왜, 공청회 하셨다면서요?

○김남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점식 위원 차관, 일어나요. 법무부 나가. 나가요.

○소위원장 기동민 지금 특정한 정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박주민 위원 지금은 국회 소위 차원에서, 아직 산회가 안 됐는데 아무리 여야 간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점식 위원 소위는 이미 끝났습니다. 협의된 소위 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야 돼요.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장이 정회나 산회를 선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점식 위원 정상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행정 부처의 장이 누구의 말쑤를 듣는 겁니까?

○정점식 위원 아니, 정상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는 나가세요.

○소위원장 기동민 국민의힘 간사나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지만 차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점식 위원 차관님, 나가세요!

○김남국 위원 차관님, 난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앉아 계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권인숙 위원 앉아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협의된 의사일정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회의에서도 협의된 의사일정이 아닌 것을 위원장께서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행동한 적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차관님, 나가세요.

○정점식 위원 차관, 앉으면 안 돼요. 이전에도 협의된 의사일정이 아닐 때 민주당 장관들은 안 왔어요, 우리가 위원회 소집했을 때.

○소위원장 기동민 아니,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속에서도 협의되지 않았지만……

○정점식 위원 지금도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위원장 기동민 장관이 출석해서,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박주민 위원 그때는 위원장님이 협의가 안 됐다고,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안 불러서 그런 것이지요. 지금은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점식 위원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에서도 협의 없이 개최된 상임위에 장관들 출석 안 했어요. 관례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는 분들은 퇴장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행정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차관, 일어나세요.

○김남국 위원 관례가 그런 적이 없고요, 저희 법사위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관, 나가세요.

○정점식 위원 일단 나가세요.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협의가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항의를 한다라고 하면 항의의 의사표시로 이석하시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관계 부처에서 회의 끝나기 전에 자리를 이석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차관님께서는 앉아 계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정점식 위원 차관, 나가세요.

○소위원장 기동민 이것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특정한 정당에서 정당의 명패를 걸고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지금 의사일정이 협의된 게 아니잖아요.

○정점식 위원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차관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김남국 위원 차관님, 일단 앉아 보세요. 다리 아프시니까 앉아 가지고……

○정점식 위원 차관, 나가요.

○소위원장 기동민 아니, 이런 회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국민의힘 관계자들께서 퇴장하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행정 부처의 장이 국회를 상대로 출석해서 답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점식 위원 이미 협의된 의사일정 끝났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질의를 차관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관을 상대로 질문할 게 없지요.

○소위원장 기동민 차관을 상대로 해서도 인권위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으니까 앉아 보세요.

○유상범 위원 의사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이 아닌데 차관이……

○정점식 위원 나가세요. 의사일정이 아닙니다. 이미 협의된, 합의된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회의가 정회하거나 산회되지

않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협의된 부분 끝났습니다.

○권인숙 위원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정점식 위원 퇴장하세요.

○김남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막 차관님보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할 만한가……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합의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항의의 표시 아닙니까? 차관, 행정 부처에서 배석할……

○김남국 위원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유상범 위원 합리적이니까 지금까지 조용히 잘 넘어간 거예요.

○김남국 위원 유상범 위원님도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유상범 위원 그러나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소위원장 기동민 회의를 같이하실 거면 좌정해서 의견들을 주시고요, 행정부를 겁박하지는 마십시오.

○정점식 위원 겁박 아닙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겁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점식 위원 협의된 의사일정 안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김남국 위원 당장 통과시키겠다 그런 의사도 아니고 같이 함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 맡아 가지고 똑같이 민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 듣겠다고, 의사일정 관계없이 의사 듣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남으라고 하면 그것 인정하시겠어요? 인정 못 하잖아요.

○권인숙 위원 위원장의 권한이지요.

○소위원장 기동민 회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정회를 선포하거나 산회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정점식 위원 행정 부처에 대해서도 이런 일정에 대해서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지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그러니까 앉아서 답변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기동민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정당에서 어떻게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앉아있어라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점식 위원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한 것은, 협의된, 합의된 의사일정은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기동민 국회에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차관님, 나가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받지 못해 답변 조치가 사실은, 법무부를 대표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하지 못했고……

○소위원장 기동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있고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물론 낸 것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법무부차관 이노공 그런데 오늘 제가 답변……

○소위원장 기동민 오늘은!

○권인숙 위원 들으세요.

○소위원장 기동민 법무부를 상대로 해서 주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들을 경청하시고 그리고 밝힐 수 있는 수준에서의 원칙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면 됩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인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법무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끼리 토론회를 개최할 테니까 거기에 같이 착석을 해서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하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양당 간에 협의 그리고 합의된 의사일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위원회는 종료된 것으로, 산회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차관, 나가세요.

○소위원장 기동민 산회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정점식 간사님의 말씀이시고요, 위원장석에서 정회를 선포하지도 않았고 산회를 선포하지도 않았습니

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소관 기관에 통보된 의사일정은 다 소화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기동민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의 재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차관 나가세요.

○정점식 위원 차관 나가세요. 차관이 나가야 우리도 나가지요. 법무부 나가세요.

○박주민 위원 위원님들도 그러면 잠깐 앉으세요.

○정점식 위원 그래야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소위원장 기동민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정당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나 자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1소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회의 재개의 과정들인 거고, 아직 정회나 산회를 선포하지 않았습시다.

○정점식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도 우리가 어떻게 개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소위원장 기동민 그 정도 의견 주셨으면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까지 소위 정기국회 들어와서 소위든 전체회의든 원활하게 합의와 협의를 거친 후에 진행됐는데 일방적으로 소위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그동안 협의와 합의의 관행을 깨뜨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으며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앉아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소위에 참석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처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소위원장 기동민 지금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힘들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기동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이탄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탄희 위원 일단 저는 유감인 점이 하나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할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어

떤 법안을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식으로 상정을 하는 그런 과정도 아닙니다. 관련해서 부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한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찬성, 반대 어느 쪽이든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서 사회적으로도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용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법무부가 위원장의 승인이나 양해나 법적인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기왕 진행되는 절차이니만큼 충분한 내용 확인과 팩트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참작해서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평등법이 발의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21대 때 아마 2020년부터 발의돼서 지난 2년 반 정도, 그 정도 이상을 사실상 논의가 멈춰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저희가 해 보면 이 평등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거의 90%가 넘고 우리 사회에 차별 없는, 여러 차별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론하는 것조차 이렇게 미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공청회를 법사위 차원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선거 등의 어떤 이유로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상태로 공청회가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반쪽짜리 공청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내용을 충분하게 좀 알아 보고 그다음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발의된 법안이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별과 관련된 최저의 기준을,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정해 놓은 것들이 다 이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자리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오해를 하시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실제 이 평등법과 관련된 내용을 차분히 앉아서 토론해보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국민적 합의를 더 모아 나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유감인 것은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항의하고 퇴장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사위 법안소위, 공식적인 소위 회의 자리인데 정부 부처의 관계자인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을 나가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차별금지법·평등법 심사 재개하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관심받지 못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를 받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학력·나이·지역·인종·사상·종교 등의 이유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불평등을 비롯한 혐오와 배제,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냅니다. 누구나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이상적 가치에 동의를 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는 여전합니다.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념에 따라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지난 20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님 등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국민 열 분 중 일곱 분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음에도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25일 우리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

가 15년 만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공청회에 대한 정당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찬반 논쟁이 제도적 제안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국가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에서 간접적인 차별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차별의 개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 사유와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다음에’라는 말로 이를 방관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디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별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 특정 차별이 다른 사회적 위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 자신의 차별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제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차별의 원인을 차별받는 당사자에게 돌리는 우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시간을 복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배제와 혐오 그리고 차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간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평등법을 심사하기 위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거고요. 자칫 지난 20대 국회에서처럼 제대로 논의도 못 한 채 폐기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57조제8항 및 제49조에 따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평등법은 2020년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된 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5월 20일

법안심사1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같은 달 25일 공청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의 권한으로써 오늘 평등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에 대한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 쟁점 등에 대한 기관 의견을 청취한 후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역시 준비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한 사정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사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방적 처리가 아닌 건설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향후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기관 의견을 청취할 시간 역시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사전 요청으로 오늘 이 자리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진 사무총장님, 염형국 차별시정국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분들이 출석해주셨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성실하게 법원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평등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위원님들, 굉장히 더딘 걸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권위는 2006년 7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지난 2020년 6월 30일에 제21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과 함께 법률안 시안을 제출했습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 있음을 주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미

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OECD 주요 국가들이 평등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제정에 대한 일부 종교계의 반대는 있지만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권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2020년 4월에는 응답자 10명 중 9명 그리고 올해 법안을 두고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인권위 조사뿐만 아니라 일부 갤럽 같은 일반 조사기관에서 하는……

○소위원장 기동민 총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해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갤럽 등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등법 제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원칙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 국격과 인권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 법률안을 비교해 보면 크게 법률명,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합차별 규정 여부의 쟁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구체 조치 관련 시정 명령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증책임 전환 관련 조항이 차이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법률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의 법률안별 차이점은 쟁점별로 심사해서 최적의 안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회를 주시면 여러 말씀을 또 심도 깊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에 살펴본 발의안 비교를 통해 드러난 조항 외에 법률적 쟁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평등법안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법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이번 국회에서 평등법이 제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평등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인권위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각 기관 간, 아마 법무부에서도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한 깊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국민들께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또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고 또 특정한 법률안만 부각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각 법안의 내용들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쟁점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명은 크게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핵심 원리이자 국제인권규범이 추구하는 평등권 보장 측면에서 이 법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쟁점 중에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안별로 21개 내지 23개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21개를 두거나 또는 2개를 추가하여 23개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인권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차별과 관련해서는 2개의 법안, 장혜영 의원안·박주민 의원안이 복합차별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두 가지 사유가 함께 적용하여 발생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사유를 통합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률 취지에 좀 더 가깝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의된 4개의 법률안 중에서 3개의 법률안이 구체 실효성 강화 취지에서 인권위에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기구 성격상 시정명령보다는 소송 지원 등 여타 구체 수단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에 제출한 위원회 시안에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 시정 권고에 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부가적으로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증책임 배분 규정과 관련해서는 대개 차별 피해자가 상대적 약자이고 차별에 관한 증거가 차별 행위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차별 피해자의 입증 곤란 현실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형평성 도모와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증책임의 배분 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률안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고의·과실 및 손해액 입증과 관련해서는 차별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차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도 피해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쟁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어렵게 마련된 시간이니까 바로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질문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 종교 활동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인권위법에서 지금 발의된 법률안은 영역에 대한 것에 종교 행위에 대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탄희 위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사회 일각의 우려는 그러면 오해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그것은 오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교의 특정한 자리에서 그것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타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이런 행위가 아닌 한은 그것은 분명히 오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탄희 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형사처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에서

지금까지 고민해 온 내용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입법 수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형사처벌 벌칙 조항, 이 법에 두고 있는 벌칙 조항은 인권위의 이런 제소 절차를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에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어떤 특정한 행위를 계속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건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규범으로 서로 규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과도한 형사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 규범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말이 조금 제가 잘 안 들어와서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만약에 차별행위가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배상보다는 많은 가중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악의적이라는 것은 행위의 고의성·지속성·반복성·보복성 규모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탄희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말씀이시고,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방금 답변 주신 내용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평등법 내지 차별금지법에서 일차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하는 것을 국가인권위가 지금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맞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나 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로부터 구제받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가해자가 사실상 보복을 하면 그 보복으로부터는 형사처벌을 통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이 선까지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 중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 1개월이 선고되었다는 이런 사례를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차별금지법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장소에서 어떤 특정 집단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다른 법에 의해서 사실 규율받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와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의 논의는 다른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니까 해외의 평등법 내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종교 활동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례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것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나?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인숙 위원 저는 법원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었지요.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 전환자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였지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전에는 성별 정정은 불허했었는데 이제는 허락한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특히 대법원 보도자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 전환자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책무가 국가와 사회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판결의 의의를 명시했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권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이 같은 판단이 우리 사회에게 나침판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판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시정하고 평등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게 지금 평등법, 그러니까 기본법인 거잖아요. 사실은 헌법 11조의 평등의 정신을 실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입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중

은 판례들을 쌓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도 그런 선에서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건데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차별금지법·평등법은 4개의 법률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권인숙 위원** 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자세한 그런 검토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법률안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법률로 정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안들 중에서 일부 개념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 그리고 대립되는 여러 의견들이 또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률, 해외 입법례 그리고 우리 헌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탄희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바, 당연히 저희는 법안을 봤고 또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데 어떤 특정 종교의 설교라든지 또는 특정 종교의 어떤 예배행위 이런 것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확인해 주셨고요.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불이익한 행위, 예를 들어서 해고한다든지 전보한다든지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이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것 확인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처 차장님께서는, 또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을 차장님께서는 여쭙보고 싶은데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합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이야기는 동성애가 불법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차장님, 동성애가 불법이다라는 법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균형법에……

○**박주민 위원** 균형법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제가 알기로는 균형법만 기억이 납니다.

○**박주민 위원** 그래서 이 법이 도입이 되면 불법이었던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재에 있는 법체계하고 좀 안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같은 경우 2006년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 전환자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실시한 바가 있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박주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인간을 차별적으로 대한다든지 또는 기본권에 있어서 차등이 발생한다라고 법원은 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검토를…… 지금 막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갑자기 저희가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대법원 판례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입장을 확인해 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아까 처벌 얘기는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설교할 경우에 차별로서 인권위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권인숙 위원** 예.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저희 차별금지 영역, 지금 발의된 법안은 대체로 4개 영역에서 차별금지 영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권인숙 위원** ‘대체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은 시정명령이나 이런 영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인숙 위원 가톨릭계 병원에서 낙태를 거부하면 차별인가 아닌가 이런 식의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권인숙 위원 왜 그러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설교를 차별금지 영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권인숙 위원 낙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계 병원에서 낙태를 거부하면 차별인가 아닌가 이런 식의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아, 죄송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인숙 위원 예.

○소위원장 기동민 신분 말씀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염형국입니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소위원장 기동민 마스크 벗고 하세요, 발언하실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경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미 헌법불합치 유예기간도 경과를 해서 낙태를 거부할 수 없는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법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염려들을 공유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 있다라든가 고소당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뭐라 그럴까요, 성소수자를 문제적으로 여기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것들이 개인 간의 굉장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있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오해 중에 아마도 캐나다에서 있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별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상 법원의 조치가 있었던 것들로 확인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과 상관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행정처 차장님, 과거에 다른 법안들 논의할 때 보면 법원은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셨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쪽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또 제가 알기로도,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서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취지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약자일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약자에게 입증책임을 전부 지우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그러한 고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 경우는 구체적인 법률안들의 규정을 검토해 봐야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현재 아주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인지에 관해서 각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국회에서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사무총장님께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요.

차별금지법 그러면 전부 다 논점이 성소수자 문제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소위원장 기동민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논점 중에 가장…… 표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맞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 거고. 만약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과거에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상태였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선언적 규정이지 아니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든 간에 그 규정이 추가가 되면서 이 법이 제정이 되어지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차별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셔야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비정규직 그리고 다양한 차별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해외 사례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부가해서 같이 답변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오해 중에 하나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하는 행위자에 대한 금지 내지는 이걸로 인한 기득권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박탈 이걸로만 국한해서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우리 공동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아주 취약한 사람들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차별이 금지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구성원들 전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여건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되어서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그러면 그 저상버스는 지체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통약자들에게도 모두 다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서 우리 모두가 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도입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혹시 이런 사례들, 우리 모두 다 같이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해외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차별시정국장이 애

기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장 기동민 포괄적으로 말씀 주시고 국장님이 또 보충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서 한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체도를 만들 때는 이 체도 하나가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겠지만 학생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학교 안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그리고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들이 끊임 없이 고민되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학교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생긴 2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왔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법과 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이 갖고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도 지금 당장은 한두 개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쳐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 같지만 교통약자들로 분류되는 임산부라거나 어린이라거나 또 노인이라거나 모든 이들에게 평등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저는 차별금지법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금지사유로 어떤 것들이 누군가의 것을 규제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아주 복합적인 층위들을 고민했을 때 그 누구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측면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사회 전체의 규범이 평등으로, 차별금지로 나아간다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이들의 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차별시정국장이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예.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차별시정 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성소수자에 국한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차별사유 자체가 2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된 사유는 성별 정체성하고 성적 지향, 두 가지 사유입니다. 나머지 21개 사유는 그 밖의 모든 차별을 규율하는 차원에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에 영국이나 미국·독일·스웨덴 등 OECD 주요 국가들이 평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장애나 혹은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 문제를 다루는 개별법이 존재해 왔으나 이러한 개별법 차원으로는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고 또 특정 사유에 한정돼서 다양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평등법을 포괄적으로 규율해서 법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취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대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차별금지·평등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헌법 11조에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차별행위자의 기존의 기득권을 박탈하거나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반이 조금 더 국격과 인권 수준이 올라가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고, 사실 과거에는 선진국의 척도가 경제적인 척도로 재 봤으나 지금 선진국의 척도는 인권 수준이 어떠한지이고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은 평등법·차별금지의 포괄적인 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 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박주민 위원하고도 같이 참석했었는데, 그때 영국의 보수당 쪽에서 왔었지요? 박주민 위원이 그때 불렀지요, 보수당 당수였나요?

○**박주민 위원** 3선 의원님이셨고 당수는 아니셨고요. 외교부장관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권인숙 위원** 외교인가 경제 쪽인가 그랬었던 장관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차별금지법을 접근해 들어가면서 특히 기업인들에게 이 법이 통과

되었을 때 기업에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확대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 변화라는 것이 다양한 차원의 변화일 수 있을 텐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올라가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활성화,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보태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인들은 ESG가 화두입니다. 인권경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고 기업 자체가 운영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유엔을 비롯한 여타 세계 국가의 연합기구들은 ESG를 개별 국가와 개별 기업에서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연성 규정 내지 강행 규정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권과 환경을 고려해서 기업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을 외면했을 때 기업 자체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타 평등법이 제정된 선진국에서도 보수당 중심으로 이러한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차별행위의 정의가 지금 나와 있는 법률상으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또는 집단을 분리·배제하는 등의 행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의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주셔도 좋고 개별적인 예시를 주셔도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직업에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할 때 그 특정한 직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고요.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차별 사례에서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와 관련된 결정례들은 이미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으니 그것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탄희 위원** 다른 법률이나 다른 정책에 의해서 허용되거나 이행되고 있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인권위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지금 이탄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진정직업자격이라는 것이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박주민 위원** 그러니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 그런 조항들을 담고 있는,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 그런 법안이 있지요? 제가 발의한 경우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예외 사유를 두고 계십니다.

○**박주민 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세신사분들도 남탕에 여성 세신사가 들어가고 반대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진정직업자격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차별이 아닌 것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기본권들 침해와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인숙 위원**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게 오해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말씀하셨던 사례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들로 이 평등법을 비추어서 하는 것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탄희 위원** 모든 차별 취급이 다 금지된다고 하는 건 오해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 다른 법률이나 정책에 근거해서 이행되고 있는 것들은 허용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박주민 위원** 아까 권인숙 위원님이 여쭙보신 분이 영국의 보수당 출신이고 평등차관이라고 하고 4선 의원이지요.

○**권인숙 위원** 맞아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법이다, 아까 차별시정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ESG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양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이 어차피 미래사회를 준비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기업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해해 나가면서 동조해 나갔던 이런 과정들을 저희한테 설명하셨고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잘 설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오해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은, 조금 반복되는 면도 있지만 평등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다 차별시정 문제로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명분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도 한번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덧붙여서 저도 차장님께 여쭙보는 건데 차장님, 차별적 또는 혐오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지금 법으로도 사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가능합니다.

○**박주민 위원** 가능하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모든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차별금지 영역을 분명하게 두고 있고 차별 사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두고 있고, 아까 말씀했던 예외적 사유, 합리적 이유라거나 하는 것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안이 제정되면 오히려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말씀을 주실 때 되게 원칙적인 말씀이지요.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제라든지 어르신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딱 짚어서 현실을 설명해 주셔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과 또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에 기반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만 다 정리해 갖고 있으면, 국민들께는 아직까지 널리 홍보되거나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례를 풍부하게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그러면 인권위가 다루고 있는 차별 사례를 몇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시정국장님.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최대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지만,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까지 가서 기본권이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그런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필요가 있고, 그 타인도 자신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고용에서, 교육 영역에서 혹은 사법행정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으로 제정이 된다면 장애인 이외의 사유로도 포괄적인 이 네 가지, 고용과 교육, 재화, 서비스, 행정의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거나 혐오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취약계층들의 권리구제가 좀 더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권인숙 위원** 하여튼 평등법은 개인의 표현을 규율하지는 않지요. 이것은 좀 다른 영역에서, 명예훼손이나 아까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모욕, 사생활 침해, 스토킹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서 다른 법으로 규율되는 거고 평등법에서는 이것을 진정하고 이러는 식의 부분은 아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원칙적으로 규율하지는 않지만 고용이나 교육, 재화, 서비스, 행정……

○**권인숙 위원** 그 영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예, 차별 영역에 해당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괴롭힘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율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는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탄희 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문은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좋은 모습은 결국은 상향, 기준을 상향한다는 거잖아요. 평등화한다고 하는 것이 제로섬으로 가지고 있는 걸 뺏아서 더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분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의 최저 기준을 상향한다, 기준 상향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준 상향의 효과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좀 이해가 돼서 혹시 그런 사례들을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체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고 또한 고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승진을 시키지 않은 사례들이 대략이든 회사든 발생을 한 적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소송이나 진정을 통해서 장애인을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함으로써 승진 배제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탄희 위원** 혹시 장애 이외의 영역에서도 사례가 있으면 조금 이따가 다른 기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자면 차별 사유가 아까 말씀 주신 게 스물세 가지 정도 되는데 혹시 개수가 좀 많은 편이다 이런 평은 없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지금 인권위법에서 19개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인권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유들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회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향이라 일단 21개, 23개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정도로 합의하고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결정례가 쌓이면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소요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아니, 너무 많다 혹시 이런 견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스물한 가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입법례를 보면 조금 많은

편이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그런데 차별 사유 자체는 사실 법에 규정된 것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예시적인 사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차별 사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탄희 위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구체화시켜 봤다……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다 보니 항목 숫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숙 위원 이미 인권위법에 이런 열아홉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헌법에도 평등권은 확립돼 있는데 왜 또 평등법이 필요한 거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아까 복합차별 얘기도 조금 하긴 하셨는데 이런 원론적인 질문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인권위법은 아시겠지만 인권에 관한 총론이라기보다는 조직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그 법에 의한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존재를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나 평등법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법에 해당되는 평등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인숙 위원 지금 일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기본법 생기고 이러면? 지금도 많은, 구제 신청 같은 거 많이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더 활성화되거나 의미를 갖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가 좀 더, 인권위 활동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어떻게 많이 달라지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일단은 지금 차별 영역의 예시 사유도 늘고 그리고 법에 규정이 구체화되면서…… 현재는 인권위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기준, 국제규범, 이런 규범을 가지고 다양하게 하고 있으나 거기서 오는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있다면 이 법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올라와 있는 4개 법안에는 소송 지원에 관한 내용이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 그다음에 가중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조항, 또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사실 기존의 인권위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사유로 사실 제한적으로 진정 정도, 혹은 소송을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그렇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개별 장애인들의 권리구제도 유효한 수단이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차별이 예방되는 효과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도 개별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경험을 가진 유럽이라든지 이런 사회를 보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나와는 다른 존재, 이질적인 존재 그리고 또 웬지 섞일 수 없는 이런 존재로 규정을 하고 그런 인식 속에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까 ESG 말씀도 주셨고 기업 문화에 그리고 국격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건 그건 구체적인, 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오히려 나의 삶을 구속할 수 있는 이런 제약적 요소로 차별금지법이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단히 불편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저는 선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선언적·명문적 이런 천명보다는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늘상 사용해 왔던 언어와 습관이 사실상 어떤 차별적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런 법이 저는 따라오는 데 크게 거부감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의 무리한 주장이 먹혀들어 가면 이것이 결국은 동성애 합법화법이고 성소수자들만의 어떤 특혜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매도당하기 십상인 거라고요. 그런 작업들에 조금 더 우리가 충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인권위의 오래된 권고 중의 하나, 유명한 권고 중에 살색 크레파스 권고가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가 출범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어렸을 때 썼던 크레파스에는 살색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주민이 이것은 인종차별이라는 진정을 하면서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인종차별행위가 맞고 그리고 앞으로 KS 품질검사를 받는 모든 크레파스에 대해서는 살색 크레파스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권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간단한 권고는 그 이후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인권의 문제를 차별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지금은 우리가 다 거론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무수히 생기면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동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것이 교육 효과가 될 것이고 또한 어떤 특정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인 여러 면에서는 분명히 소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리가 아프고 그럴 때는 교통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자신의 소수성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갈 곳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이 국민 전반의 평등을 위한 법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인숙 위원 워낙 염려가 많아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교육 영역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차별 얘기를 하고 차별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균형법 같은 것이 깔려 있는 바탕의 오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동성애를 권장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와 같이 평등법이 제정되면 과도한 동성애교육, 성교육 그런 식의 어떤 차별 반대에 대한 교육이 결과적으로 동성애 권장 교육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사회적인 염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가 양산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정말 한쪽에서는 굉장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 교육, 청소년 교육 현실에서의 차별 문제 이런 것들과 지금 차별금지법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의 의미들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평등법은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다양한 속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과정에서 성교육은 다양성과 보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가치에서 이루어집니다. 특정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관련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그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평등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평등사회로 진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률로써 동성애는 불법이거나 범죄시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법률에 있으나 거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에 대한 가치,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정체성을 옹호하고 그것을 주입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김형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소위원장 기동민 어찌 보면 법원이 가장 늦게 사회적으로 변하는 곳이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소위원장 기동민 저는 법원은, 사법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을 보면 되게 전

향적인 판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진보다 보수다 나누기보다는 어찌 보면 세상이 변해 나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법적 판단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법원 입장에서 보시기에, 법원을 대표해서 이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서 모든 의견들을 말씀 주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법관으로 수십 년간 재직해 오셨고, 이 논의가 2007년도부터 즉 진행되었고 결국은 제대로 된 논의를 이루지도 못한 채 이런 정도의 논의조차도 대단히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수준 속에서 대법원이, 법원이 의견을 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우선 법원은 재판기관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을 하면서 그 판결에 판사라든지 선언을 하면서 그게 쌓여가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재판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의견을 낼 때는 그동안 쌓여 있는 판례나 이런 선례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준비할 때도 그동안 이렇게 판결에 나와 있는 판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의견을 내게 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절차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우리 사회 수준에서 이런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심도 깊게 논의해서 뭔가 한번의 큰 판단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거쳐서 어떤 큰 결단을 내리는 것하고 법원하고는 국가기관의 작용상 약간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의 그러한 주된 의견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라라는, 그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절차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차장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성 관련해서 평등법 발의안은 악의적 차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손해액의 3~5배 정도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처벌이라고 반발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도급법이나 기간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악의적·반복적 차별이 계속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최초로는 하도급법 거기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어서 그걸 도입하는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평등법·차별금지법 4개의 법률안에서 지금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도 기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국내의 입법례들을 잘 검토해서 그것들과 균형과 형평이 맞게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숙 위원 그리고 인권위 사무총장님!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권인숙 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차별의 명분들을 우리가 좀 더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별의 명분이 아니라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의미들이 단순히 평등법에서 동성애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지면서, 성소수자 부분이 강조되어지면서 성소수자 양산법 이런 식의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들이 잘 전달이 안 돼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아이들 관계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게 결국 사실은 왕따나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또래 문화 속에서 개입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사회적으로 줄여 나가고 교육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평등법의 차별을 반대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신을 교육 속에서 계속 강조하려고, 설득해 내려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평등법의 의미들도 그렇고 의미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득되어야 되는, 적극적으로 설명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겠지만 인권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문들을 표시하실 때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교육 속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학업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처받는 존재가 되는 것과 아니면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과 평등법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동민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꼭 선택해야 될 변화에 이 평등법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기업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단순한 예가 아니라 의미로서도 전달될 필요가 있는 것의 얘기를 좀 더 강조하고 싶네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가 차곡차곡 쌓여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막 물밀듯이 밀려 오거든요. ESG 문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몇 사람들의 아주 좋은 덕담, 좋은 제안, 그렇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이상론자들의 접근법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몇 년 만에 세상은 확 변했다고요.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애써 눈 감고 귀 닫았던 문제들이 결국은 지금 세상의 질서들을 바꿔 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 있어요. RE100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것을 잘 예비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불원간에 올 수 있는 커다란 변화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문제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또 이 법안에 대한 이해라든지 오해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 문제 역시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법을 처리하느냐 처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담고 있는 시대정신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어떤 제도적 정비를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 건지, 선언적 규정이 많은 이유는 또 무

엇인 건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파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기울여야 된다.

국회에게 ‘법만 만들어 주시면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접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치하는 집단입니다. 정치하는 집단에게 구체적인 반대 집단은 되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라고요. 그렇지만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들은 대단히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들은 아주 특정한 집단들처럼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피력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법원도 그리고 인권위도 그리고 소관 관련 기관·단체 역시 마찬가지로 저변들을 확대하고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거다, 그러면 성숙도와 맞춰서 법안은 어찌 보면 야속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현실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보태고 싶은데요. 아까 ESG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기업이, 파riba게뜨 사건도 있었고 기업인들의 설화들이 있잖아요. 차별적 설화들이나 이런 것이 사실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시대에는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요즘 불매운동의 현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차별적인 감정과 이런 것들이 집단 속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그것 때문에 잘하면 굉장히 큰 이미지를 얻어 나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정말 급속히 몰락하기도 하고, 그것은 단순히 연예인들한테만 한정되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 보수당 그쪽에서 왔던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사진이 변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 구성원들이 차별이라든가 인간 존중의 의미들을 살려 나가는 것이 기업적 이윤에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사례들이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법원도 마찬가지고 법무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신뢰를 얻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집단에서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한 기준들을 계속 같이 올려 나가고 이것이 갖는 의미들이 뭔지를 구성원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시대에 안 맞는, 물론 개개인도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지만 전체 집단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기준들이 진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별금지법이 시대와 함께, 그러니까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이것은 국제질서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준들을 같이 못 찾아 나가면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와 이런 것이 갖는 의미들이 잘 설득되어야 되는 시기가 정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위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갖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기업 이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어떤 사회적 기준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자기 삶에서, 직업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같이 많이 설득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총장님,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국회의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이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각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도 지금 여러 교계의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도 반대하시는 많은 분의 의견도 저희는 모두 다 오해에서 비롯되었지 이해를 하신다면 다 동의하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이미 문화 전반, 예를 들면 드라마 또는 가요, 모든 사회 곳곳에서 기업들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모두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많은 기업이 그것을 일종의 자신들의 상품으로서도 드러낼 만큼 그렇게 보편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이 사회가 시스템으

로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은 문제라는 것을, 적어도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서 그래서 동료 시민들과 평등하게 살 건가를 배우는 기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한국 사회가 시스템으로 차별금지를 받아들일 때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위원 아니, 부족한 자리지요.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기동민 국장님, 마지막은 아닌데 그냥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혹시 더 제기할 게 없으면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박주민 위원 저는……

○소위원장 기동민 말씀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시기 전에 저는 오늘 좀 정리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 게 아까 이탄희 위원님 질의하신, 형사처벌 조항이 굉장히 국한된 그런 상황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 법이 없더라도 차별적이고 혐오적 표현으로 인권을 침해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마치 어떤 분들은 이 법이 도입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고 남용되고 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좀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정직업자격이나 적극적인 차별 시정 조치나 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어떤 차별적 대우나 차별적 조치는 다 허용이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다시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법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캠페인성 법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말씀하실 기회였으니까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국장 염형국 차별금지법이 캠페인성 법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개별 차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네 가지 영역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캠페인성 법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구요.

또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7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그때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거나 혹은 모든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여당에서 조금 다수 의석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킨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많이 해소가 되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증진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권위나 법원이나 법무부 또는 관계 부처에서도 이 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조금 더, 그간 오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가지고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도 한번 좀 노력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님들 더 주실 말씀 있으세요?

차장님, 뭐 주실 말씀 있으세요?

○법원행정처장장 김형두 (고개를 저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최근에 한 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들의 혐오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보면 성별에 의한 혐오나 차별 발언 그리고 또 외모에 의한, 가정 형편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때는 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 그 피해가 집중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끊임 없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사회가 그 세대에게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쩌면 개별 법률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국회의 노력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세 분 위원님 마지막 발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탄희 위원 저는 뭐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팩트 체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에 대한 3대 오해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면 좋겠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종교 활동의 경우에 적용이 없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차별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또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합법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집약적으로 표현을 해서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되면 이 법안에 대한 좀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장애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 평등법 내지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기준 상향법이다, 그런 효과가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가 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정도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박주민 위원님 혹시……

○박주민 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부는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전 정권하의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좀 소상히 국민들께 소개되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토론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하는 국민의힘 위원님께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제대로 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사실 권인숙 위원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 여기까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정치적 압력과 외압을 행사하셨거든요.

권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 사실 어떤 법이 세상에 잘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전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그런 면에서는 참 많이 알려진 법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세부 내용까지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지요. 다 알 수는 없고,

이게 국회가 가장 이것을 다루기 워낙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의, 다 지역구 위원님들을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상황이고 그것을 넘어가면서 뭘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의 일이라서, 명분이라든가 어떤 국제적인 요구, 기준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타당한 공감 이런 것들이 갖춰지더라도 참 어려운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만큼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기동민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 굉장히 어려운 자리 만드신 거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저는 지금은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의,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하여튼 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사무총장님,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해의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를 분명하게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이 국회의 시간에 차별금지법의 어떤 쟁점들이 정리되더라도 지금은 만들어져야 될 시간이라는 것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오늘 국회에 오셔서 국회의 현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당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의 장은 퇴장을 하셨지요. 지금 이게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도 있는 것이지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해와 걱정이 거기 인식의 차원에서 머무르면 모르는데 구체적인 정치적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정치인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처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기 권인숙

위원님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마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2시간 말씀하셔도 부족할 텐데 말씀들을 줄이고 아끼는 건 다음 과정을 대비해서 해야 될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망한다면 여당 위원님들과 더 협의해서 법원 행정처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역시 국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들로써 그리고 또 다수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좀 반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인 정부 때 했어야 됩니다,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치권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국회를 설득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걸 처리하지 못한 후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제가 우리들한테 넘겨져 와 있다, 그 과제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다 결단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해라라는 발상은 조금만 해 주시고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짊어지면서 뭔가 질적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근거들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정도의 토론토, 사실 공청회는 진행이 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의 이름으로 이런 정도 토론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1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2보와 3보를 어떻게 내디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충분히 상의하겠고요. 당 지도부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여당 위원님들도 상당한 문제의식과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말씀들 없으시면 회의를 이런 정도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인권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견 청취, 토론은 이런
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권인숙	기동민	김남국	박주민
유상범	이탄희	장동혁	정점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노공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법제처차장	김창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진
차별시정국장	염형국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	-----